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7고단13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위

판 결

사건 2017고단1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1.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무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D, E, F 등 SNS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OO아 공원 옆 버스정류장으로 나와 짐 왔어. 어디냐고 당장 와라. 제발 부 탁이야 대화하자. C 너 짐 어디야 아직 밖이지 나 너희 집 앞 공원으로 가고 있어. 얼굴 한 번 보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하나님 믿지마T 너같은거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마. 혼전임신한 년은 돌로 쳐죽여야 햐. 야너

속도위반 거짓말이지? 당장 애 지워. 무시하지 마라고. 대답하라고 이 더러운 년아. 나 죽는 꼴 보고 싶냐고. 거짓말이잖아 그냥 촬영하는 거지? ○○아 제발 부탁할게. 거짓말 맞지? 떡 왜 쳤냐구? 야 이년아 너 그러면 안되T"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불상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에 접속한 다음 "너하고 섹스하고 싶다고, 스뮴 말하잖아 내가. OO아 너 그거 잘하니?? 준비해서 와. 야 C 어디냐구. 당장 너랑 해야겠어 그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고소장
- 1. D 등 SNS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의무의 부과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김주완